

경영전문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 1 장 입학(편입학 및 재입학 포함)

제1조(모집시기) 학생선발은 년 2회 학기별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조(제출서류) 대학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학원서와 증빙서류를 전형료와 함께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전형방법) 석사과정은 학사과정 성적 등에 대한 서류심사와 전공분야에 대한 지식, 학업계획서에 따른 수학준비도, 외국어능력, 추천내용 등을 묻는 구술시험을 원칙으로 한다. 단, 모집과정에 따라 필답고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4조(합격기준) ① 구술시험은 2인 이상 5인 이하의 심사위원이 개별적으로 평가하게 한 후 그 성적을 합산한다.

② 합격에 필요한 과목별 최저점수 등의 합격기준은 매 학기 입학정원, 시험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한다.

제 2 장 교과와 이수

제5조(수강신청) ① 학생은 매 학기 소정의 교육과정에 의하여 개설된 과목을 과정 PD교수의 지도에 따라 수강신청하여야 한다.(2007.12.11., 2022.1.21. 개정)

② 학생은 반드시 수강신청결과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정해진 기일 내에 한하여 정정할 수 있다.

③ 이미 수강 처리된 과목은 임의로 철회할 수 없으며, 수강신청한 모든 과목의 성적(F학점 포함)은 성적기록표에 기록된다.

④ 계절학기 수업의 경우 학기당 6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2007.9.4., 2017.1.2., 2022.1.21. 개정)

제6조(재수강) F학점을 취득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재수강할 수 있다. 재수강한 과목의 기 취득성적은 R로 표기하며, 취득학점 및 평점계산에서 제외한다.

제7조(수업방법) ① 수업은 주간, 야간, 주말에 실시한다.(2017.1.2. 개정)

②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학과 타 대학원(석사 및 박사학위과정 포함) 및 다른 과정과 합동수업을 할 수 있다.(2017.1.2. 개정)

제8조(무단결석) 특별한 사유없이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 결석한 과목의 성적은 F로 기록되며 과목낙제가 된다.

제9조(학위과정간 교차수강) 서로 다른 학위과정 개설 과목의 수강이 필요한 경우에는 유사교과목에 한해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인정학점의 범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폐강기준) 수강신청 결과 수강생이 7인 이하인 과목은 폐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

한 경우는 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2013.12.30. 개정)

제11조(필수과목) ① 필수과목, 공통 필수과목, 전문 과목은 본 대학원이 정한 기준에 따라 이수하여야 한다.(2015.5.21., 2017.1.2. 개정)

② 경영학사 취득 후 5년 이내 입학한 자에 한하여 B+ 이상 학점을 취득한 필수과목의 경우 소정의 심사를 거쳐 최대 2과목까지 전문과목으로 대체할 수 있다.(2017.1.2. 신설)

제12조 <선수과목, 2017.1.2. 삭제>

제13조(수업연한의 단축)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자가 계절학기 수업, 현장실습, 학점인정 등으로 소정의 수료학점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수업연한을 6개월까지 단축할 수 있다. 다만, 편입학한 자는 단축대상에서 제외한다.(2007.9.4., 2022.1.21. 개정)

제 3 장 학점인정

제14조(타 대학원과 학점교류) ①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가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본 대학원과 학점교류협정이 체결된 국내·외 타 대학원에서 취득한 전공분야의 학점은 학기당 국내 대학원은 3학점, 국외 대학원은 12학점까지 본 대학원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2008.4.8., 2017.1.2. 개정)

② 본교에서 최소 30학점을 취득하고 복수학위협정 체결대학(원)이 정한 최소 학점을 취득한 경우에는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2008.4.8.신설)

③ 학점교류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학위 과정 연계, 2017.1.2. 삭제>

제16조(대학원학점 선취득) ① 학사과정 학생이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석사과정의 과목을 이수하고 해당 석사과정에 진학할 경우 9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다만, 대학원 학점으로서의 인정은 학사과정 졸업에 필요한 최저학점의 초과분에 한한다.(2015.5.21 개정)

② <2017.1.2. 삭제>

제16조의2(이수면제) 공통 필수과목 중 학부에서 수강하여 B+ 이상 학점을 취득한 경우 소정의 심사를 거쳐 최대 6학점까지 이수면제 할 수 있다.(2021.7.12. 신설)

제17조(재입학, 편입학자의 학점인정) ① 편입학한 자가 전적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편입학한 과정의 교육과정과 동일 또는 동일계열 과목에 한하여 21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동일 또는 동일계열 과목 여부는 당해학생의 지도교수 및 과정주임교수가 심사한 후 대학원장이 결정한다.(2009.6.26.개정)

② 제적 또는 자퇴한 자가 동일과정에 재입학한 경우에는 재적당시 취득학점을 통산하여 인정할 수 있다.

제18조(학기중 휴학에 따른 학점인정) 한 학기 수업일수의 3분의 2를 경과한 자가 병역의무에 따른 군복무, 임신·출산 및 육아, 질병 등의 사유로 휴학할 경우, 담당교수가 재량으로 평가하여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2013.11.11 개정)

제 4 장 과정변경·휴학 및 복학

제19조(과정변경) 과정의 변경은 한학기 이수 후 1회에 한하여 과정주임교수가 심사한 후 대학원장이 결정한다.(2007.12.11. 개정)

제20조(휴학과 복학) ①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하여 학기중 휴학을 원하는 경우에는 종합병원장이 발행한 4주이상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013.11.11. 개정)

② 의무복무로 인한 휴학자는 전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복학하여야 한다.

③ <2013.2.22. 삭제>

④ 임신·출산 및 육아 휴학, 창업 휴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을 준용한다. (2013.11.11 신설)

제 5 장 5년제 학·석사 연계과정

제21조(모집단위와 인원)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정별 일정 범위내에서 대학원장이 결정하여 모집할 수 있다.

제22조(지원자격) ① 학사과정 학생으로서 5학기 이상 등록하고, 총 평점평균이 3.50 이상이며, 7학기 내에 소정의 졸업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자는 5년제 학·석사 연계과정에 지원할 수 있다.

② 학사과정의 주전공, 복수전공, 연계전공과 관련된 과정에 지원할 수 있으며, 편입학한 학생은 지원할 수 없다.

제23조(제출서류) 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학사과정 학과주임교수 및 대학장을 경유하여 대학원 학사운영실 제출하여야 한다.(2007.3.28., 2019.8.21., 2020.3.18. 개정)

1. 지원서 1부

2. 학과주임교수 추천서 1부

3. 성적증명서 1부

제24조(전형방법) ① 전형은 서류전형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학원 과정별로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전형은 5학기 또는 6학기 말에 실시하며, 최종 선발자 발표는 7학기 수강신청기간 직전에 한다.

제25조(수업연한) 수업연한은 학사과정은 3.5년, 석사과정은 1.5년, 전체 5년으로 하며, 이를 초과한 자는 중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6조(수강신청) 이 과정에 선발된 학사과정 학생은 매 학기 6학점, 통산 12학점의 대학원 석사과정을 수강할 수 있다.

제27조(학점인정) 학사과정에서 수강한 대학원 과목의 이수구분은 전공과목으로 하며, 학사과정 졸업학점 초과분에 한해 석사과정 졸업학점으로 인정한다.

제28조(등록과 취소) ① 이 과정으로 7학기 만에 학사과정을 졸업하는 자는 졸업과 동시에 대학원 석사과정에 등록하고 입학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학사과정을 7학기에 졸업할 수 없으며, 8학기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1. 석사과정 입학전에 이 과정을 포기하였거나, 석사과정 신입생으로 등록하지 않은 자

2. 학사과정 과목 평점평균이 3.50 미만이거나 기타 졸업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자

③ 석사과정 입학 후 첫 학기에는 군 입대와 병가를 제외하고는 휴학할 수 없다.

④ 석사과정 입학 후 3학기 내에 수료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자는 학점등록할 수 없으며, 4학기 정규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29조(대우와 혜택) 이 과정을 이수중인 자에게는 석사과정 입학금을 면제하며, 조교 채용시 우선권을 부여한다.

제 6 장 과정간 및 학연산 협동과정

제30조(설치과정) 본 과정의 설치는 학칙에 의한다.

제31조(운영위원회) ① 본 과정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단위과정별 운영위원회를 각각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과 과정수료 인정에 관한 사항
2. 학과 전공의 설치와 폐지 및 정원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출강 및 논문지도에 관한 사항
5. 이 과정에 관한 제 규칙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6. 기타 이 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각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3인 이상 5인 이내로 대학원장이 위촉하며, 각 분과별 위원장은 대학원장이 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7 장 학위수여

제32조(학위수여) ① 대학원 평점평균 3.0 이상, 취득학점 45학점 이상 취득한 자에게는 대학원장의 제청에 의해 총장이 해당 학위를 수여한다.(2017.1.2. 개정)

② 학위수여는 봄(2월)과 가을(8월)에 한다.

③ 석사학위의 수여는 서식 제1호와 제2호 서식의 학위기로서 행한다. (2010.9.8 개정)

제33조(학위기의 표기) 학위기에는 과정별 구분에 의하여 다음의 사항을 표기할 수 있다.(2007.12.11. 2008.11.14. 2009.6.26. 2010.9.8., 2013.5.6., 2013.12.30., 2017.1.2., 2019.4.30., 2019.11.7., 2021.7.12. 개정)

학위명	과정	트랙
경영학 석사	Dongguk Global MBA	-
	Dongguk MBA	HR/Leadership Operations Marketing Finance Accounting MIS Entrepreneurship

	비즈니스데이터애널리틱스 MBA	-
	의료기기혁신경영 MBA	-
	약학 MBA	-

제 8 장 장 학 금

제34조(지급대상)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국가 또는 학교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5조(선발기준) 장학생의 선발기준은 본 대학교 장학규정을 준용한다.

제36조(종류와 지급기준) 장학의 종류와 지급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문·특수대학원 장학금 지급 내규에서 별도로 정한다.(2007.12.11, 2008.4.8, 2009.1.5, 2010.1.25., 2012.01.11., 2013.12.30., 2014.10.13., 2017.1.2., 2017.8.21., 2018.7.6., 2020.1.13., 2021.3.4. 개정)

제 9 장 현장실습(2015.10.12 개정)

제37조(현장실습) ① 1학기 이상 이수하고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3.5이상인 재학생은 학업과 관련한 국내외 기관·기업체 등에서 현장실습(Internship)을 이수하여 재학 기간 중 최대 9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② 신청서는 소정기간 내에 소정의 심사를 거쳐 과정 주임교수의 심사 및 승인을 얻어 대학원 학사운영실에 제출하여야 하며, 경영전문대학원장은 신청서에 대한 최종 승인 결정권한을 가진다.(2017.1.2., 2020.3.18. 개정)

③ 현장실습생의 수강신청 학점은 현장실습 인정학점을 포함하여 매 학기 최대 수강신청 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④ 현장실습으로 취득한 성적은 장학생 선발의 성적 산정에는 반영하지 않는다.

⑤ 1회의 교육기간은 통산하여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38조(현장실습의 학점인정) ① 학점은 120시간을 3학점의 기준으로 하되, 연수기관과 체결한 협약서 및 연수생이 제출한 보고서, 평가표 등을 토대로 학점을 부여한다.

② 현장실습학점은 졸업학점에 포함하며, 최대 9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③ 과목명은 현장실습(Internship)으로 표기하며, 성적표시는 P 또는 F로 한다.c

제 10 장 준 용(2017.1.2. 신설)

제39조(준용)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교 일반대학원 학칙시행세칙을 준용한다.

부 칙(2006. 12.18.제정)

제1조(시행일) 이 제정세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일반대학원 경영학과, 무역학과, 회계학과, 경영정보학과 석사과정과 경영대학원 석사과정에 입학한 재적생은 2007학년도에 한하여 편입학에 준하는 소정절차를 거쳐 경영전문대학원으로 소속을 변경할 수 있으며, 기 이수한 학점은 최대 12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제3조(시행내규) 이 세칙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2007.3.28.개정)

이 개정세칙은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9. 4.개정)

이 개정세칙은 2007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12. 11.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7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5조는 2007년 4월 1일부터 적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8. 4. 8.개정)

이 개정세칙은 2008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11. 14.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 제33조는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시행세칙 제36조의 별표1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9. 1. 5. 개정)

이 개정시행세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6. 26. 개정)

이 개정시행세칙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25 개정)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0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9.8. 개정)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1.11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2. 22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5. 6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3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11.11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3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시행세칙 중 제20조의 창업 휴학은 2014학년도 1학기 휴학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3.12.30.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시행세칙 중 제36조 장학금 종류와 지급기준은 기존 General MBA(full-time) 재학생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부 칙 (2014.10.13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4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5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5.5.21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5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5년 3월 1일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5.10.12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5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1.2 개정)

제1조(개정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7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33조(학위기의 표기) 개정 내용은 2017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7.8.21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시행세칙은 2017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개정 학칙시행세칙은 2017학년도 2학기 장학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7.6.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시행세칙은 2018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시행세칙은 2018학년도 후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9.4.30.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9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9.8.21. 개정)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9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11.7.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9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9.11.7.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0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0학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0.3.18. 개정)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4.13.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0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코로나19 감염 확산방지 등에 따른 휴학적용 특례) 코로나19 감염 확산방지를 위한 국가적 예방조치 등으로 인해 정상적 학사참여가 어려운 학생에 대해서는 제20조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휴학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2020학년도 1학기에 한하여 학칙 및 관련 규정에 따른 통산 휴학가능연한에 산입하지 않는다.

부 칙 (2021.3.4.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1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1학년도 2학기 입학생 모집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1.7.12.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1학년도 2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2.1.21.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삭제 2021.3.4.>

<서식1>

석제	호				
학	위	기			
		성명			
		19	년	월	일
위 사람은 본 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과정명〕을 이수하고 본 대학원 위원회의 심사에 통과하였으므로 경영학석사(MBA)의 자격을 인정함.					
		20	년	월	일
동국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장 ○ ○ ○ (인)					
위의 인정에 의하여 경영학석사학위를 수여함.					
		20	년	월	일
동 국 대 학 교 총 장(인)					
학위번호:					

<서식2>

No. 000

Dongguk University

This Certifies That

Ⓢ Ⓢ Ⓢ (성명)

has completed the required course of study and is therefore awarded
the degree of

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

with all the rights and privileges thereunto appertaining.

In Witness Whereof, this diploma is granted by the Board of Regents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Faculty.

Presented at Dongguk University, on twenty-sixth day of August, two thousand and ten.

President

Dean, Business School